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630호
----------	-------

2017. 06. 22.(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양섭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17년 06월 02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06월 09일

-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와 구성·기능 중복으로 인해 운영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가. 주요 내용 검토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회의체가 아니라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2006년 11월 조례 제정을 통해 2007년 2월 설치된 것으로, 주요 기능은 민·관·학의 공동참여로 충북의 교육발전 방안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09년 2월까지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미구성, 미개최 되는 등 운영 실적이 매우 미흡함.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5월22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되고,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 7.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구성 및 기능의 중복 문제가 대두됨.

※ 협의회 현황

구 분	근 거 법 령	운영주체	기 능	위원회 구성
충청북도 교육발전 협의회 (‘07. 2.26.)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06.11.17) ※ 민선4기 공약사업 ※ 15개 시도 없음 충남(‘11.3.30.제정) : 중복 폐지 검토중	도	-민관학 공동참여 교육발전방안 협의 -지역인재육성 등	-총 40명 이내 (도회 교육감 대표총장 사회및경제단체장 등) ※ 회장: 도지사 ※ ‘09년 부터 미구성 및 미개최
충청북도 교육행 정협 의회 (‘15. 5.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061220 협회설치근거 신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조례 (‘15.3.27)	도· 교육청 공동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발전방안 협의	-총 13명 이내 (도·교육청 국장급, 도의원 교육전문가 등) ※ 공동의장 2명 (도지사, 도교육감)
지방대학 및 지 역균형인재육성 지원 협의회 (‘16. 7.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14729 협회설치근거 마련) 충청북도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16.7.8.)	도	-지역인재 고용영 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협의	-총 15명 이내 (공무원 교육전문가, 대학·산업체·연구 기관 인사 등) ※의장: 행정부지사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은 이후 신설된 2개 협의회(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지원협의회)에서 모두 논의가 가능하며, 구성도 중복됨.
- 이로 인해, 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 또한, 성격, 기능 중복으로 이를 막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배 소지가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발전협의회의 해소와 관련해,
 - 우리 위원회(정책복지위)에서도 2016년 행정사무 감사 시, 유사·중복 및 필요 없는 위원회 정비를 요구한 바 있고,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 9. 9.)에 따른 정비대상에도 부합하며,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방향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15. 9. 9.)]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미개최 ⇒ 폐지 ·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 위원회 <small>*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독자존속 필요시 통합 후 분과위 편제) ·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개최 · 비효율 	⇒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행자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 타 시·도의 경우,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 외에는 충남(제정일 2011. 3. 30) 단 한 곳에 불과하며, 충남도 폐지를 검토 중에 있는 바,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법리적이거나 내용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법리상 문제가 없으며, 내용면에서도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절차상으로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31호

□ 구성근거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학교환경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범사회적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 자격조건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협의회 회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장
 2. 도교육감
 3. 도교육위원회 의장
 4. 도내 대학 총장 또는 학장
 5. 민간사회단체장
 6. 도내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
 7.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임기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기능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2.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3. 우수 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도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운영현황

- '06. 11. 17. :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07. 2. 26. :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25명 (명단 별첨)
 - 도지사, 도교육감, 도의회위원장, 도교육위원회위원장
 - 도내 대학(교) 총·학장 (14명)
 - 민간사회단체장 (5명)
 - 충북개발연구원장, 충북테크노파크원장
- 실무위원회 구성 : 8명
 - 도(2) : 정책관리실장, 정책기획관
 - 교육청(2) : 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과장
 - 대학(3) : 충북대 기획처장, 영동대 기획처장, 충청대 기획조정처장
 - 충북 RHRD센터장

< 운영실적 >

- 교육발전협의회
 - '07. 9. 19 충북인재양성전략 및 교육강도 실현계획 협의
 - '08. 4. 2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협의
 - 교육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 '08. 4. 16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협의
- ※ 이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실적 없음

□ 구성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자격조건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관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의 균형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3명 이내로 공동 추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임기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기능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기능)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 구성근거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협의회는 안건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구성현황

- 최초구성 : 2015년 5월 22일
- 임기 : 2015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

□ 개최실적

- 교육청, 조례안 공포·시행(‘15.3.27) 및 외부위원 위촉*(‘15.5.22)
 - * 도지사 추천: 1명(남기현 충청대 교수), 교육감 추천: 2명(최미애 前도의원, 오황균 前교사)
- 외부위원 위촉 문제제기 및 시정요구(‘15.7월)

※ 외부위원 위촉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하나(조례 제3조), 교육감 추천 2명에 대하여는 우리도와 협의나 동의 절차가 없었음

○ 교육청, 도의 개선요구 공문 구두 요청('15.10월)

- 이미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도와 재협의 후 위촉은 어려우므로 도에서 개선요구하면 조례개정을 통해 외부위원 추가 위촉

○ 개선요구 공문 시행('15.10.13)

- 교육감 단독명의로 3명을 위촉한 것은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
- 위촉장을 교육감 단독명의로 교부한 것은 형식을 결여한 것이므로 시정 조치할 것

○ 교육청, 개선요구에 대한 회신('15.10.26)

- 외부위원 위촉은 교육협력관을 통해 교육지원팀장과 협의함
-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명기
- ※ 교육청은 도에서 요구하였기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

※ 교육지원팀장과의 협이가 조례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도에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을 뿐(재위촉 또는 조례개정 등) 조례개정을 특정하여 요구하지 아니함

○ 교육청, 실무협의회 개최 관련 협조 요청 공문 시행('15.11.3)

○ 실무협의회 개최 협조 요청 회신('15.11.3)

- 개선요구 공문 시행('15.10.13)으로 구성·운영 하자에 대하여 먼저 시정·개선을 이행한 후에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

○ 교육청, 실무협의회 운영 계획 공문 시행('16.6.30)

○ 실무협의회 상정 안건 제출 공문 시행('16.8.15)

○ 2016년 제1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16.8.17)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계획(안) 서면의결

○ 실무협의회 상정 안건 검토 의뢰('16.9.5)

○ 실무협의회 교육청 상정 안건 검토 의뢰('16.9.8)

○ 2016년 제1회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16.9.23)

- 근거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실무협의회)
- 참석 : 실무협의회 위원 12명(도 6, 교육청 6)
(도) : 정책기획관 외 실무위원 5, 안전관련 부서 3
(교육청) : 기획관 외 실무위원 5, 안전관련 부서 5

- 안건처리결과 : 가결 5, 유보 1
- 도청 안건(4), 교육청 안건(2)
 - ※ 유보 :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국회 관련법규 처리결과에 따라 차기 실무협의회 상정)

- 도청 안건(4)

연번	사 업 명	관련부서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상정 여부
		도 청	교육청	
1	오송·혁신도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정책기획관	행 정 과	가 결 (중장기 적극 검토)
2	오송·혁신도시 자율형 공립고 지원 강화	정책기획관	중등교육과	가 결 (전국 → 도내 모집)
3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	유 보 (국회 관련법령 처리결과에 따라 차기 실무협의회 상정)
4	충북 종단열차 활용 학교 현장학습(안) 홍보 요청	교통물류과	체육보건안전과	가 결

- 교육청 안건(2)

연번	사 업 명	관련부서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상정 여부
		교육청	도 청	
1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진로직업특수 교육과	청년지원과 일자리기업과	가 결
2	안정적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무상급식비 분담 협조	교육복지과	정책기획관	가 결 (급식 질 향상 등 보완 상정)

○ 2016년 제2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16.10.24)

○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결과 통보('16.11.3)

□ 참석자: 13명

○ 공동의장(2명): 교육감, 도지사

○ 위 원

- 외부(위촉)위원(5명): 남기현 교수, 박봉순 도의원, 오황균 前교사, 이숙애 도의원, 최미애 前도의원

- 당연직위원(6명)

· 교육청: 류재황 교육국장, 김옥진 행정국장, 김규완 기획관

· 도 청: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송재구 정책기획관

□ 안전 목록 및 협의 결과

연번	사 업 명	협의결과	관련부서		비고 (제안)
			교육청	도 청	
1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원안가결	진로직업특수 교 육 과	일자리기업과 청년지원과	교육청
2	안정적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협조	원안가결	교 육 복 지 과	정책기획관	교육청
3	오송·혁신도시 자율형 사립고 설립	보 류	행 정 과	정책기획관	도 청
4	오송·혁신도시 자율형 공립고 지원 강화	보 류	중등교육과	정책기획관	도 청
5	충북 중단열차 활용 학생 현장학습 협조	원안가결	체육보건안전과	교 통 물 류 과	도 청
6	2017년도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원안가결	기 획 관	정책기획관	교육청

-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공문 시행('16.11.4)
- 협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4건)

연번	사 업 명	협의결과	관련부서	비고 (제안)
1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원안가결	청년지원과, 일자리기업과	교육청
2	안정적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협조	원안가결	정책기획관실, 식의약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
3	충북 중단열차 활용 학생 현장학습 협조	원안가결	교통물류과	도 청
4	2017년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원안가결	정책기획관실	교육청

- 교육행정협의회 상정안전 추진관련 교육청에 자료 송부('16.12.05)

- 충청북도 인재육성을 위한 우수자사고, 사립외고 신설방안
- 충청북도 인재양성을 위한 기존 고교 육성 방안 ※ 수습사무관 연구과제

□ 향후계획

- 제2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17.9월중)
- 제3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17.10월중)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30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발 의 자 : 이양섭, 이광희, 김영주,
박우양, 박종규, 윤은희,
황규철

1. 폐지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와 구성·기능 중복으로 인해 운영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일부개정조례안 : 불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31호

라. 협 의 : 정책기획관과 협의함.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인사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제2조제2항 각 호에 대한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관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3명 이내로 공동 추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1-17 조례 제 2958호

(일부개정) 2009-05-29 조례 제 3173호

(일부개정) 2011-12-30 조례 제 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학교환경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범 사회적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북도교육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 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2.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3. 우수 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도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장
2. 도교육감
3. 도교육위원회 의장
4. 도내 대학 총장 또는 학장
5. 민간사회단체장
6. 도내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
7.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4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29>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및 검토 등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29>
② 협의회 간사는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 5. 29>

제9조(고문) ① 협의회는 유관기관의 장 및 교육계 원로 중 5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지문에 응하며, 회장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보상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